

202.24호

행정 명령

**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
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**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 명령(Executive Order)을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따라서 오늘 저 Andrew M. Cuomo 뉴욕주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규, 지방 법률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난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혹은 이러한 재난 대응 지원 및 도움을 위해 필요한 경우,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(Executive Law)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일부터 2020년 5월 25일 월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수정합니다.

-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)가 개발한 적절한 훈련을 완료하였으며 면허를 가진 약사가 식품의약국(Food and Drug Administration, FDA)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(COVID-19) 검사를 주문하고 SARS-CoV-2 또는 그 항체를 검사하며 1988 연방 임상 실험 개선법에 따라 면제 의무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또는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되었다고 생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교육법(Education Law) 6801 항.
- 면허를 면면허를 가진 약사가 FDA 인증을 받았으며 제한 서비스 연구소에서 사용을 면제받은 검사에 대하여 공중 보건법(Public Health Law) 세부조항 579(3)에 따라 제한된 서비스 연구소에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 또는 그 항체를 검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로 지정되는 것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공중 보건법 571항 세부조항 (6).

또한, 행정부법 2-B조의 제29-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5월 25일 월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.

- 37번 자치구 시의회 의석을 결정하는 특별 선거는 취소되며, 해당 대표석은 총선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.

2020년 4월 25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

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